

금융소득종합과세

○ 이자,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'97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별로 1년간의 「이자, 배당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일시재산소득, 기타소득」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.

• 다만, 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, 배당소득의 경우 그동안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당해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.

■ 그러나 '97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되는 '96년 발생분 이자, 배당소득부터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융소득자에 대하여 4천만원까지는 15%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.

• 반면에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대다수 금융소득자는 종전과 같이 금융 기관에서 이자,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(15%)로 분리 과세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.

■ 그리고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, 사채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된다.

○ 금융소득은 부부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된다.

■ 종합소득세는 어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각종 소득(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소득)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(이들 자산소득이라 한다)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.

• 즉, 부부 각자의 연간 이자,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.

(예) 본인의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



임 현 석/세무사

<표 1> 비과세저축상품 예시

저축상품명	가입대상자	비 과 세 요 건
가계장기저축 ('98년말까지 계약분)	세대구성원	1세대 1통장, 3년 이상 5년 이하, 월100만원 한도 적립
근로자주식저축 ('97년말까지 계약불입분)	근로소득자	1인 1통장, 1년 이상 5년 이하, 연금여액의 30% 범위 (1천만원 한도)
개인연금저축	만20세 이상 자	10년 이상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지급받는 연금
장기주택마련저축	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	1인 1통장, 10년 이상 매월 100만원 한도로 불입

천만원인 경우 부부합산 금융소득 5천만원중 4천만원은 15% 세율로 원천 분리과세하고 1천만원만 종합과세

○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제도 시행 전보다 세금이 크게 줄었다.

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자,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을 종전의 20%에서 15%로 대폭 인하하여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모든 금융소득자는 종전세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.

•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자도 종합소득세율의 인하, 각종소득 공제 수준의 인상 등으로 극소수의 고액금융 소득자 외에는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거의 없다.

*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1억2,380만원(연리 10% 저축원금기준 약12억원) 이하까지,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 8,100만원(원금기준 약8억원)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시행전보다 세금이 줄어듬.

< 종합소득세율 >

과세표준	세 율	누진공제액
1천만원 이하	10%	0
1천만원~4천만원	20%	100만원
4천만원~8천만원	30%	500만원
8천만원 초과	40%	1,300만원

○ 금융저축상품에는 비과세하거나 종합과세 않는 것도 많다.

■ 정부에서는 저축장려를 통한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각종 비과세저축 제도를 두고 있다 (표 1).

*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,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

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자,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10%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.

• 가계생활자금융저축(1세대 1통장, 저축원금 1,200만원 한도)의 이자소득은 10% 세율로 원천분리과세(종합과세 합산대상에서 제외)

• 소액가계저축, 소액채권저축, 근로자장기저축, 근로자(장기)증권저축, 장학적금 등은 10%의 우대 세율로 원천징수(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)

■ 장기채권(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5년 이상) 및 장기저축(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)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30%(10년 이상 장기채권은 25%)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.

• 또한 '97년부터 발행예정인 사회간접자본채권(SOC장기채)의 이자에 대하여는

15%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할 방침이다.

-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금융소득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하도록 본인에게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다음연도 3월중에 통보하여 준다.

■ 자기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 두거나,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아서 합계하면 된다.

- 다만, 거래금융기관에 가면 통장예이자, 배당소득 지급내용을 기재해 주며,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매년 3

월말까지 이자, 배당소득의 지급내용을 우편, FAX, PC통신 등으로 통보한다(종합과세 대상자는 새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내줄 예정임).

■ 1년 동안의 금융소득금액을 인별로 부부합산한 결과 종합과세 기준금액(4천만원)을 초과하면 매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.

-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신고분에 대하여는 20%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고,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%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.

INFORMATION

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안내

-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력기술인(특급·고급·중급·초급기술자)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으로 아래의 교육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설계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- 설계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(기술사·설계사·설계보조자 포함)

2.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·한국전기안전공사·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-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자를 제외한 전력기술인으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

예)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소속되어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사와 관리원을 제외한 모든 전력기술인

3.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전력기술인(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기술능력으로 채용되어 등록된 전기분야 기술사, 공사기사 1·2급의 자격 취득자로서 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)

- 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

- 국가기술자격과 학력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

4.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- 엔지니어링 업체에 소속되어 전력관련 분야에서 계획·조사·설계·시험·검사 등의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전력기술인

5. 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○ 교육훈련일시

- 기술사·기능장·특급기술자 : '97. 6. 20~7. 1
- 기사 1·2급, 기능사 1·2급 및 중·고급기술자 : '97. 7. 2~7. 4
- 기능사보 및 초급기술자 : '97. 7. 8~7. 11

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·공사기사 1·2급 및 전기공사기능사 1·2급의 자격을 취득한 전력기술인은 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.